

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7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)

가. 제정이유

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도모하고 학생선수, 체육지도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「고성군 스포츠빌리지」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입주 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2)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3)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4)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~제10조)
- 5)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4조)
 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표준임대료 기준 준용 산정
- 6)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주자 준수사항을 규정(안 제15조~제16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8조
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2조, 제10조
-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, 제11조
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

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시설유지보수비 확보(15,000천 원)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의견 미반영[복지지원과-30064(2025. 8. 6.)호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제2항 ⇒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제2항에 ‘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’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.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 없음.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330호
 - 예고기간: 2025. 8. 11.~2025. 9. 1.(21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조~제3조, 별표1)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시설 명칭·위치 및 현황을 규정하여 조례 적용 범위와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함.
- (안 제4조~제6조) 입주 대상을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·선수, 학생선수 세대, 체육 지도자 및 체육단체 종사자로 제한하고, 공개모집과 운영위원회 심의를

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목적 달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
- (안 제7조~제11조) 운영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나, 입주 관련 안전처리 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과 위원 해촉 사유 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부서장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(안 제12조~제13조) 입주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되 연장 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및 명의변경 제한 등을 통해 관리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4조, 별표2)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라 표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목적과 입주자 특성을 반영하고,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5조~제17조) 시설 유지관리 책임, 입주자의 관리의무, 계약 해지 및 임대료 반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, 90일 범위의 유예기간을 두어 주거 안정도 고려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음. 다만, 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훼손 금지, 훼손 시 책임, 시설 이용 질서(전대 및 사용권 양도 금지 등)에 대한 부서장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빌리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 체육진흥 및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고 공공 임대시설로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 다만,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시설물 관리, 계약 해지·퇴거 기준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세부적 보완 방안을 검토·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